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크라우드펀딩 기업자금 조달기능 및 중개기관 업무영역 확대 등 〉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3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발행기업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9
3.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17
4. IR 허용 및 투자광고 제한 완화	24
5. 범죄경력자에 대한 투자중개 금지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5.
3. 회 부 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투자한도 및 발행기업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개방적 자금조달과 홍보효과 등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여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함.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 제117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제3항 단서·제4항 신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요건 이내에서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함.
- 3)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을 보유 중이거나 후속 경영자문

과 관련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 대하여 새로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등 허용(안 제117조의7제11항, 제117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 간 의견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금지(안 제117조의7제12항 신설)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사기, 횡령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마. 연간 총 투자한도 확대(안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제2호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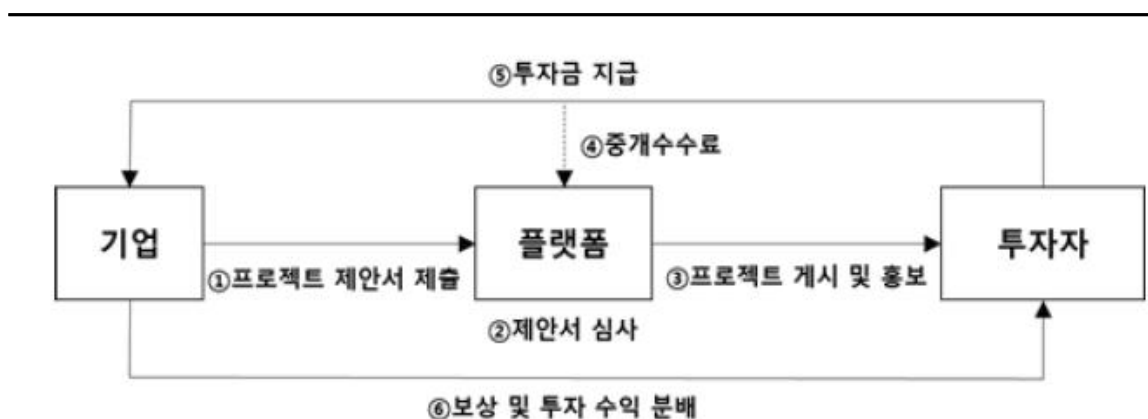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함.

IV. 검토의견

1. 클라우드펀딩 현황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 “클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클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함.

[표1] 클라우드펀딩 집행절차 예시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 클라우드펀딩의 유형과 관련하여, 클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 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증권형과 대출형의 중개업이 금융업에 해당함.

[표2] 클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구 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 배분(배당금 등)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보상(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자료: 금융위원회)

○ 이 중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비금융업인 후원형과 기부형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하며,¹⁾ 일반적으로 “클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을 “클라우드펀딩”으로 약칭하기로 함.

□ 클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²⁾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㉞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2) 다만, 업력 7년 이내인 코넥스 상장기업(클라우드펀딩 외 공모실적이 없으며, 상장 3년 이내)과 비상장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메인비즈기업·사회적기업(업력무관)은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함.

□ **크라우드펀딩의 모집방법**과 관련하여,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공모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³⁾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펀딩이 성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⁴⁾ 및 전문투자자⁵⁾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투자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표3]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한도 없음	한도 없음

□ **연도별 크라우드펀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24년까지 999개 기업(1,304건)⁶⁾이 총 2,179억원을 조달하여 기업별 평균성공금액은 2.2억원이고, 펀딩성공률은 67.6%임.

3)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중개업체에 사업계획서·재무서류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간소화함.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인 자,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을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사람 등

5)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 적격엔젤 등

6) 동일기업이 2회 이상 펀딩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성공기업 수와 성공건수 간 차이가 있음.

[표4] 연도별 크라우드펀딩 현황

(단위: 사,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참가건수(A)	206	303	303	327	226	109	119	141	194	1,928
성공건수(B)	108	180	199	205	150	95	91	111	165	1,304
성공기업(C)	102	169	186	191	137	87	72	97	153	999
성공금액(D)	165.5	270.8	317.3	390.1	279.3	165.5	185.7	167.0	238.2	2,179.3
성공률(B/A)	52.4	59.4	65.7	62.7	66.4	87.2	76.5	78.7	85.1	67.6
회당 평균금액(D/B)	1.5	1.5	1.6	1.9	1.9	1.7	2.0	1.5	1.4	1.7
기업당 평균금액(D/C)	1.6	1.6	1.7	2.0	2.0	1.9	2.6	1.7	1.6	2.2

주1 동일기업이 2회 이상 펀딩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성공기업수와 성공건수간 차이 발생

주2 기업이 여러회차 발행하는 경우 각 연도별 성공기업 수에 중복산정되므로 연도별 성공기업 수의 단순 합계가 총 성공기업 수 합계와 상이

(자료: 금융위원회)

□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2016년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규모도 영세한 편임.

○ 금융위원회는 완화된 공모규제가 적용되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엄격한 투자 한도 및 발행기업 제한 등이 크라우드펀딩의 장점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참고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시장규모가 더 크고, 성장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5] 미국·영국과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 현황 비교

(단위: 백만\$, £백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미국(\$)	-	-	23	86	86	130	215	272	494	-	1,306 (약 1조7,631억원)
영국(£)	84	245	272	333	363	475	549	-	-	-	2,321 (약 3조9,457억원)
한국(\$)	-	-	12	20	24	29	21	12	14	12	143 (약 1,931억원)

주1 미국은 Reg. CF에 따른 발행실적, 영국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만 집계

주2 USD 환율 1,350원, £ 환율 1,700원 기준

(자료: 美 Crowdfund Capital Advisors, 獨 Statista, 英 Cambridge Centre 등)

-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선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발행기업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중개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IR허용 및 투자광고 제한 완화,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중개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6] 개정안의 주요내용

주제	주요 내용
발행기업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 발행기업 범위를 창업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 확대(1천만원→2천만원) - 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 확대(2천만원→4천만원)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 중소기업 지원에 한하여 중개업자의 겸영 허용 - 중개업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의 제한적 허용 - 중개업자의 경영자문의 제한적 허용
IR 허용 및 투자광고 제한 완화	- 단순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허용 - 투자설명회 개최의 제한적 허용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중개 금지	사기·횡령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중개 금지

2. 발행기업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발행기업의 범위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투자자 1천만원 및 적격투자자 2천만원의 현행 연간 총투자한도를 각각 2배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항제1호, 안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②⑥ (생략)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②⑥ (현행과 같음)
②⑦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②⑦ ----- ----- ----- ----- -----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⑧·②⑨ (생략)	②⑧·②⑨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 ③ (생략)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④ -----

현행	개정안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생략)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u>2천만원</u>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17조의7제11항제3호-----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4천만원</u>-----

현행	개정안
하는 금액	-----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u>1천만원</u>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 <u>2천만원</u> -----

□ 현행법은 클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대상을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하되, 업력 7년 이내의 일부 코넥스 상장기업⁷⁾, 비상장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메인비즈기업·사회적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은 발행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⁸⁾

7) 클라우드펀딩 외 공모실적이 없으며, 상장 3년 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함.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㉔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법인으로서 그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나.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금융 및 보험업
 - 나. 부동산업

□ 개정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발행기업의 범위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2천만원 및 4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발행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양적 확대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임.

○ 다만, 동일 발행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500만원, 적격투자자 1,000만원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⁹⁾

□ 이와 같은 발행기업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는 금융위원회의 “크라우

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라. 무도장 운영업

마. 그 밖에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나. 중소기업이 1개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드펀딩 발전방안(2020. 6.)”의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도 신규 투자수요 및 신사업진출 등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기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해외사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eer-to-Peer, 이하 “P2P”)과 비교 시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 확대 측면에서 투자한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크라우드펀딩 시 발행기업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해외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설정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은 연소득·순자산, 순투자가능재산 등에 따라 연간 투자한도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일기업 한도만을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완화된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7] 해외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연간한도	일반투자자: 1천만원 적격투자자: 2천만원	최대 연소득 순자산에 따라 차등화 최소 \$2,500 ~ 최대 \$124,000	순투자가능 재산의 10%	한도 없음
동일기업	일반투자자: 5백만원 적격투자자: 1천만원	한도 없음	한도 없음	동일기업 50만엔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P2P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4,000만원, 적격투자자 1억원으로 클라우드펀딩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8] 클라우드펀딩과 P2P의 투자한도 비교

구 분	클라우드펀딩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현행	개정안	
일반투자자	동일인 : 500만원 총한도 : 1,000만원	동일인 : 500만원 총한도 : 2,000만원	동일인 : 500만원 총한도 : 4,000만원* * 투자상품에 따른 예외 있음
적격투자자	동일인 : 1,000만원 총한도 : 2,000만원	동일인 : 1,000만원 총한도 : 4,000만원	동일인 : 2,000만원 총한도 : 10,0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이처럼 발행기업의 범위 및 투자한도가 확대될 경우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투자자금이 늘어나는 등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발행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당초 클라우드펀딩 도입 취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기존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창업·벤처기업에게 온라인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제출 서류를 축소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바, 업력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 투자대상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사업기반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자금조달이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수도 있음.

- 다만, 이에 대하여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전체 규모가 확대되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업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발행기업 범위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설계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발행기업의 범위는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관계법령과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이중으로 업종제한을 적용받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더이상 ①의 업종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¹⁰⁾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제2호11)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발행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클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업종에서 제외된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발행기업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클라우드펀딩 발행대상 기업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⑳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

나. 부동산업

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라. 무도장 운영업

마. 그 밖에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3.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하여금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① 중소기업 지원업무 겸영, ②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③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46조제19의5호 등).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 ----- -----.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현행	개정안
④ ~ ⑨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아니 된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3.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영에 관한 자문 계약이 계속 중이거나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계속 중이거나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446조(벌칙) ----- ----- -----.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 현행법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겸영, 자기계산에 의한 자기중개 증권취득 및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금지하고 있음.

○ 중개업자가 발행기업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발행기업의 증권을 취득 또는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맡게 될 경우, 발행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어 중개업자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중개기관이 증권발행의 단순 중개 역할에서 벗어나 계속적으로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중개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한정되며, 주로 엑셀러레이팅 업무¹²⁾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기계산에 의한 발행기업의 증권취득은 안 제117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에 한하여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¹³⁾ 취득증권 합계액이 자기자본 이내여야 하며, 그밖에 건전성 확보

12) “엑셀러레이팅”이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¹⁴⁾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 한편, 경영자문의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 이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자문에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 제117조의7제4항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증권 발행기업, 자기계산 취득증권 매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후 경영자문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에 대하여 새로운 중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매입 등을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나, 자기계산에 의한 증권취득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매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매매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업 인가가 필요함.

○ 현행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

14) 금융위원회는 동일기업의 온라인소액증권 취득 잔고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기의 계산으로 온라인소액증권을 취득하는 사실이 투자자 및 발행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 증권 취득 후 1년간 처분을 제한할 것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계획임.

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두 개념 간 주된 차이는 영업의 목적이 “자기의 계산”인지 “타인의 계산”인지 여부임.¹⁵⁾

○ 현행법 제9조제27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¹⁶⁾ 법 개정을 통해 자기계산에 의한 자기중개증권취득이 허용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사실상 투자매매업을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투자매매업 인가가 필요하게 됨.¹⁷⁾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중개업자의 자기계산에 의한 증권취득이 형식적으로는 투자매매업의 성질을 지니나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투자매매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자기계산에 의한 자기중개 증권취득의 1차적 목적은 중개업자의 자기이익 실현이 아니라 발행기업 지원에 있다는 점, 시행령에 증권취득 후 1년간 처분제한 등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므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㉞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17) 참고로, 2024년 2월 기준 영업 중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11개 업체로, 이 중 전업 중개업자는 9개, 겸업 중개업자(증권사 등)는 2개임.

로 현실적으로 증권이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계산에 의한 증권취득을 온전한 투자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따라서, 자기계산에 의한 자기중개 증권취득의 경우 이 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¹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유사한 입법사례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4항에서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펀드 운용 및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IR 허용 및 투자광고 제한 완화

□ 현행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플랫폼을 통한 광고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개업자·발행기업 명칭·업종 및 증권 청약기간 등 단순광고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를 허용하고, 단순광고의 경우 포털 사이트가 아닌 매체를 통해서도 투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손해 배상책임의 대상에 투자광고와 IR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7 제11항, 안 제117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의12).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⑪ - ----- ----- ----- -----.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 제117조의7제4항 신설로 인하여 항 번호 변경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
<신설>	1의2. 제117조의9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회의 개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	
<신설>	4. 증권발행의 일반적인 조건
<신설>	5. 증권발행의 예상 일정
<신설>	6.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신설>	7.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들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설명회의 장소, 참관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9제1항·제2항에 따른 투자광고(투자광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제117조의10제2항 ----- ----- ----- ----- ----- ----- -----

현행	개정안
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완화된 공모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광고도 온라인 상에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 이는 중개업자 플랫폼 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과장광고, 투자과열, 증권사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IR을 허용하고 단순광고에 대한 수단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바, 개정안은 투자설명회의 장소, 참관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IR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7조의9제2항), IR 및 투자광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117조의12).

5. 범죄경력자에 대한 투자중개 금지

□ 개정안은 발행인과 대주주 및 임원이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횡령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 등 또는 「자본시장법」상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중개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7제12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신 설>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⑫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이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을 확인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및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로 인한 가중처벌로 한정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444조(벌칙) ----- ----- -----. 11의3. 제117조의7제1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한 자와 그 증권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한 자

□ 개정안은 사기 등의 범죄전력²⁰⁾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일반 공모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투자자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크라우드펀딩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범죄이력²¹⁾이 있는 기업²²⁾을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117의10제2항²³⁾에서는 발행인의 홈페이지 게재사항으로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²⁴⁾ 위임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발행인과 대주주 또는 임원의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²⁵⁾하고 있음.

20) 발행금지 대상인 범죄는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모든 벌금 이상의 형벌임.

21) 과거 10년 이내 증권발행·거래 등 관련 유죄선고(사기·기망, 시세조종 등)

22) 발행기업, 발행기업의 임원, 발행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보유자 등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 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④ 영 제118조의1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

- 그런데, 개정안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117조의10제2항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을 확인하여 발행인, 대주주 또는 임원이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고시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현행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발행인, 대주주 또는 임원의 범죄 전력을 홈페이지 게재사항에 추가하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1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